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무 사례

세무 업무를 지원 업무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의 세무업무가 복잡하다고 토로한다. 전반적으로 사회구성 요소가 복잡한 인도에서 세무업무가 복잡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세무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이 지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니,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많이 헷갈리기도 한다. 인도에서 내부적인 세무관리와 대관(세무소) 업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편차는 있겠지만 3~5년 정도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도에서 비즈니스하기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2~3년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나라"라고 대답하고, 좀 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라고 대답한다. 이런 느낌은 사업 수행과 직접 연계되는 세금 관련 업무의 혼선과 시비가 더욱 부추긴 것이 아닐까 한다.

인도에서 프로젝트 사업장(project office)과 현지법인에서 지난 6년여 동안 엔지니어링 업무와 플랜트 공사업무에 관련된 회계 및 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인도 세무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회계사, 세무사, 세무서(공무원), 당사 세무직원 등 세무업무 관계인들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뿐만 아니라, 악착같은 근성과 끈질긴 의지 그리고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다."

정성을 들여라

인도에서는 세금에 대한 절세전략은 고사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조차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여러 비즈니스 분야와 관계된 세법의 내용이나 세금 종류별 적용관계 등 이론적 지식은 관련 서적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세의 적용 범위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03년 이전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당시에는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세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수주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세법 개정이 있으면서 플랜트 프로젝트의 서비스 업무 부문인 기기 설치, 토목 · 건축공사, 시운전 등에 대해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우리 회사의 담당직원은 서비스세의 등록과 납부의무를 피력하였고, 서비스세가 적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협력업체는 서비스세 개정법령 발효 이후 계약서상의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서비스세를 대금청구서에 반영하여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신규 법령 및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 추가 정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유사 계약조항과 그 조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회사의 입장이 정

세무관리 업무가 실질적인 수행 업무와 별개라고 인식하거나,
간접 또는 재무인력에 국한된 지원업무라 인식되어
소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해지지 않았다며, 추가정산에 대한 지급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서비스세 등록과 납부의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했고, 협력업체에는 서비스세를 지급하여 일을 지연시키거나 멈출 것이라는 협박을 거두게 해야 했다. 또한 서비스세가 계약업무 수행에 문제가 된다면 계약자의 비용으로 선 지급하고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정산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 즉 사업주가 향후에도 정산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세무서에 이해를 구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인도에서는 세금종류별로 담당 세무서가 다름)에 우리 회사의 업무 담당자를 여러 차례 보내어 서비스세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 적용 방법 및 처한 어려움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문의하도록 했다. 이는 세법에 대한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담당자와 세무공무원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세 지연과 체납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시간을 벌고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세무서와 협의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세 등록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등록한 뒤에는 사업주의 정산 지급 지연을 이유로 우리 회사의 납부의무에 따른 신고 · 납부 · 정산 등을 순연시켰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수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업무를 지속하도록 했다. 그러는 중에 2년이 흘러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으며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증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서비스세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서비스세 문제를 종결시켰다.

만약 명목상 규정 그대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금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고, 환급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며, 비용 정산 또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세금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세무관리 업무에 정성을 쏟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온적 대응은 금물

인도에서 엔지니어링 플랜트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주로 고려되는 세금은 법인세와 판매세, 서비스세 등일 것이다. 법인세는 자체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이익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다루는 데 어려움이 없겠으나, 판매세는 거래지역, 거래형태, 거래물품, 공급자의 사업형태 등에 따라 CST(Central Sales Tax) , LST(Local Sales Tax=VAT)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되고, 면세 및 환급 관련한 C-Form, E1-Form, E2-Form, Road-Permit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판매세와 관련해 특별히 원가절감 때문에 소규모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업체가 부담할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그 업체의 세금을 대납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왜 그러한 미 등록업체를 사용했느냐 그것은 탈세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며,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는 인도의 세무공무원들이 따지고 든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외국 업체의 세무업무 담당자는 본국에서 하던 업무관습과 개인적인 경험에 따

• 인도에서 플랜트 비즈니스 수행 시 관계되는 주요 세금항목 및 적용의 예

구분	항 목	세 목	비 율	상세 내용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현지법인 33.99% (30% + 10% Surcharge + 3% 교육세)	법인수익에 대해
			외국법인 42.23% (40% + 2.5% Surcharge + 3% 교육세)	
			MAT(Minimum Alternate Tax)	법인세액이 장부상 이익의 10% 이하일 경우 적용
		TDS(Tax Deduction At Source)	업종별, 거래별, 소득원천별로 다양 (2~20%)	선납 법인 및 개인 소득세 제도
간접세	기자재 조달	Excise Duty	현지 기자재 구입금액의 14%	Local 제조업체 납품 기자재에 적용
		Central Sales Tax (CST=판매세)	주 간 기자재 구입금액의 2%(2008년부터)	Transit Sales 거래증명 (E1-Form, C-Form 교환) 필요
		Local Sales Tax (LST=판매세=VAT)	주 내 기자재 구입금액의 4~12.5%	주 내 거래물품에 적용
	공사 수행	Service Tax	공사비(설치 & 시공) 및 시운전 금액의 12.36%	공사 관련하여 설치, 감독, 수송 등에 부과
		Work Contract Tax	공사계약 금액에 대해 2% 원천징수	-
		BOCW (Building & Other Construction Welfare Cess)	공사계약 금액에 대해 1% 원천징수	근로 복지 관련 세금
	관세 (수입기자재)	기본관세	물품별 상이 공산품의 경우 최고 10%	수입물품
		CVD(Countervailing Duty)	수입 기자재 구입금액의 14.42%	수입물품에 대한 상계관세
기타 세금	개인 소득관련	Individual Income Tax	총 급여/년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급여의 33% 정도	구간별 누진 과세
		Professional Tax	Rs 2,500/년, 인	매월 납부, 원천징수
		Provident Fund	24% (12% Employee+12% Company)	매월 납부, 원천징수
		Fringe Benefit Tax	복리후생적 비용에 대해 20%가 과표	비목별 요율 상이
		ESIC (Employee State Insurance Corporation)	5% (1.75% Employee+3.25% Company)	공장 및 현장 근로자 대상, 주마다 적용기준 상이
	주 경계 통과	Octroi Tax	물품가액의 2~3%	주 경계 통과 시 부과
		Road Tax	장비가액 기준 약 0.5%/년	공사용 장비 주 경계 통과 시 부과
	기타	Wealth Tax	잔존가치의 1%	150만 루피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1% 부과
		BCTT	10만 루피 이상 현금 인출 시 초과금액의 0.1%	-

라, 의도적인 것이 아니니 거래업체와 주고 받은 서류를 통하여 증명하거나 미납 부문에 대한 규정된 벌금이나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흘러 사건을 거의 잊을 만할 때, 과대 계상된 과표에 대해 거액의 세금과 벌과금 납부 고지서(Tax Order)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회계사와 변호사를 동원하여 하급부터 상급 법원까지 몇 년에 거쳐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며 어렵게 승소하게 되더라도, 재판에 들어간 돈과 시간을 보상 받을 길은 없다. 일이 이 지경이 되면 인도 사업에 매우 소극적으로 되어 비즈니스를 축소하게 마련이다. 또 몇 년이 흐른 후 재개하더라도 새로운 업무 담당자가 일을 함으로써 기회비용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인도인들은 아주 섬세(복잡)한 면이 있어서, 구구절절 말하고 쓰고 확인한다. 사소한 것도 빠트리지 않고 파일 관리를 한다. 그들만큼 '철저하게' 대응하려니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들고 그래서 인도가 힘든 곳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인도는 준비를 잘 하면 일이 되는 곳이고, 소홀히 하면 일이 안 되는 곳이 되는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

이해 관계자들의 협조가 중요

2003년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주 바로다 지역에서 플랜트 공사를 수행할 때의 사례이다.

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인 바로다 지역에 판매세를 포함한 관련 지방세를 등록하여야 했지만, 5년 전 당시에 구자라트주 바루치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등록한 판매세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규 프로젝트의 관할지역인 바로다 세무서에서는 기존의 바루치 지역의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바로다 지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세금 납부를 종용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과거 프로젝트 수행 시 구축한 바루치 지역의 세무서와 현지 세무사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 있고, 또한 대도시인 바로다보다는 중소도시 바루치에서 판매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로다 지역 세무서 담당자(국장급)를 만나서 우리 회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절한 인맥을 찾아 우리 회사 입장을 이해시켰다. 결과적으로 바루치 세무서에서 판매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정산업무까지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에서는 업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엔지니어링 플랜트 비즈니스와 연계된 각각의 세금부담을 고려해 보면 사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계약(투자)금액의 10% 이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 세금을 어떻게 잘 다루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투자 금액의 적정성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세무관리 업무가 실질적인 수행 업무와 별개라고 인식하거나, 간접 또는 재무인력에 국한된 지원업무라 인식되어 소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세무업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면밀하게 관리하여 적정하게 납부할 세금만을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가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POSRI

장 관 희
삼성엔지니어링 인도법인 차장